

'25년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.

1. 기사내용

- 세계일보 등은 12.27일자 「“걸음마 아기가 상품권 구매했다?“... 불법 ‘꼼수’ 여전」 제하의 기사에서, “올해 5세 이하 온누리상품권 구매자수는 1,286명이고 구매금액은 76억4,000만원 달한다면서 꼼수구매를 막아야 한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'25년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.
 -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부정유통에 악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.
-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
 -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'25년부터 지류상품권의 월 최대환전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, 월 개인 할인구매한도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합니다.
 - 또한 골목형상점가를 550곳까지 확대하고, 자동충전기능 등 디지털상품권 사용편리성을 강화하여,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중소벤처기업부 | 책임자 | 과 장 | 안원호 | (044-204-7890) |
| | 전통시장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윤성웅 | (044-204-7874) |